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관련한
요건·절차를 정하고, 책장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등록증 규정 정비,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대한 임시
장애인등록증 효력 인정 등(안 제4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별지제6호 서식)
-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발급 요건, 유효기간(3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회수(폐기) 및 기능 정지·회복 등(안 제5조의2
에서 제5조의4 신설)
- 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범위 및 금액(안 제4조 제4항, 제5항)
- 라. 책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마련(안 별표1 제1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22. ~ 10 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을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등록해야”를 “등록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기재사항을”을 “기재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이 기능이 부가되지 않은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등록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5.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선택을 바꾸어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7.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④ 영 제20조의2제2항 단서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의 경우”란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신분증형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신분증형 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재발급 사유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천원
2. 제3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1천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해 제2항에 따라 등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임시로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분증형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통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교부할 때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임을 확인받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제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 등록증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한 경우에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장애인이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신분증형 등록증을 이용하여 제1항의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법정대리인의 동의)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의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4(모바일 등록증 회수등) ①법 제32조의3제4항의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이 회수된 이후에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등록증의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등록증의 분실 신고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정지된 모바일 등록증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수된 이후에는 분실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등록증”을 “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으로 한다.

별표 1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췌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胰臟全切除術)을 받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안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	------	------	------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남 []여
	사회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위 장애인의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무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장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에 동의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복지욕구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간접적 소득(감면 등) []건강 및 의료 []고용 []주거 []일상생활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해당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의무재판정 []조정재판정	• 등록증 재발급 사유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신분증형 []금융카드형	[]기간만료 []훼손 []분실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청	[]기재사항 변경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집적회로(IC)칩 사용 []큐알(QR) 촬영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포함 [] 미포함 [] 신용 기능 [] 직불 기능	[]카드전환(-) []기타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정보변경 []반납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규 []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반납사유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교부 []대여 []수리	[]사망 []양도·증여 []폐차 []등록말소 []기타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감면서비스(대행)신청]

[]휴대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TV 수신료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고용 서비스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 []취업지원 및 상담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직 장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5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신청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기존 장애인등록증		첨부	
발급기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 예금주(관계)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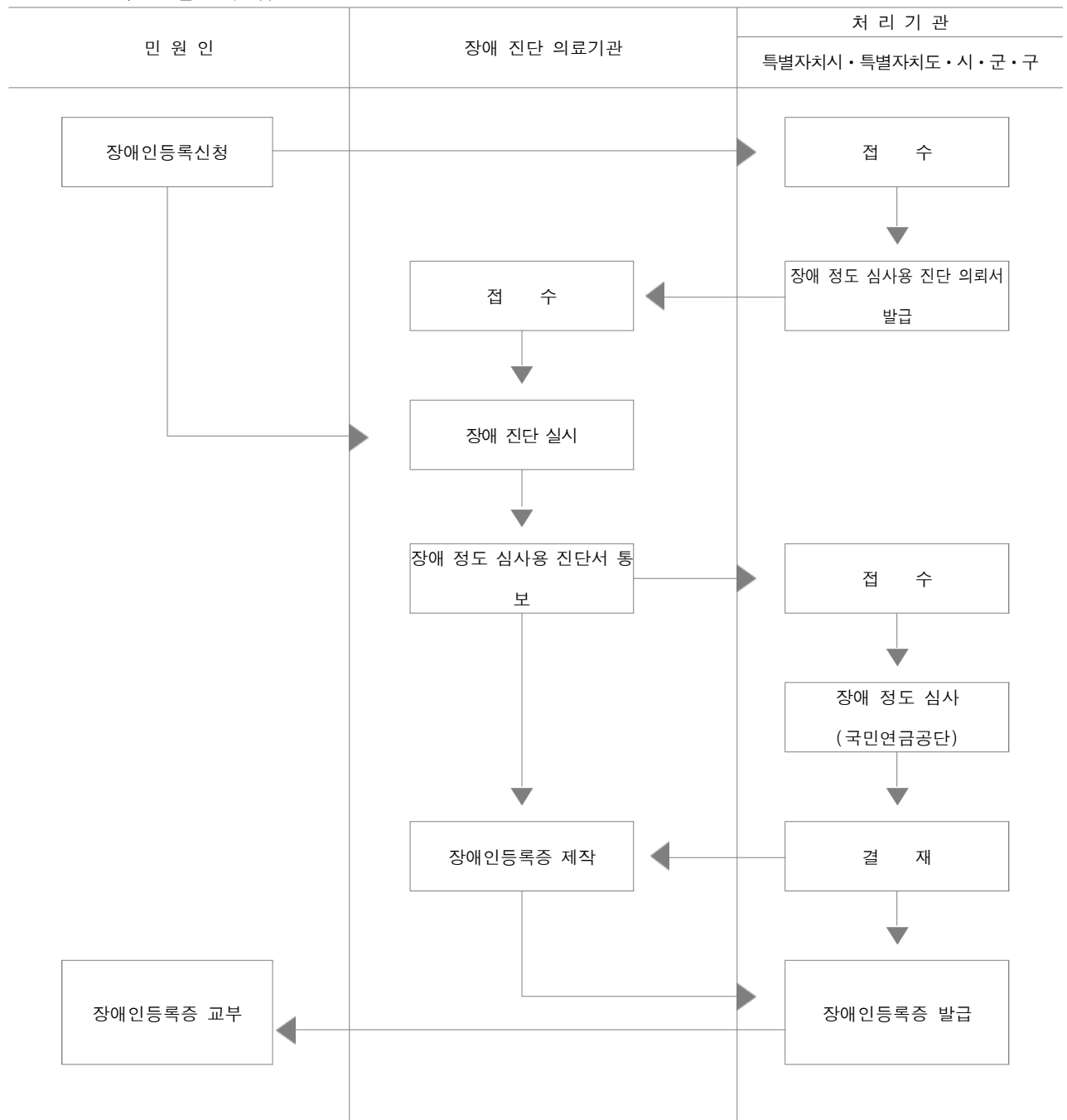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장애 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이전 심사 시 공단에 제출한 자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1.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2.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 등록에 따른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장애인대상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 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수급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 추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까지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나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자동차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 표시하고 자동차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신청기관 방문 또는 주민등록기관 방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장애인등록증이 발송되며, 해당 주소로 발송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급 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개인 등기우편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발송 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재발급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신청일		유효기간: ※ 아래 확인일부터 30일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명	사진 3.5cm × 4.5cm	
	주소		
주장애 및 장애 정도 ※ 기재여부 선택 가능		부장애 및 장애 정도 ※ 기재여부 선택 가능	
등록번호		최초·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 기재여부 선택 가능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유의사항	1.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사진 및 유효기간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확인서는 장애인등록증이 유효기간까지 임시로 장애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확인서는 사용 후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 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 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 (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 급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 증 교부 등) ① ----- ----- ----- ----- ----- 등록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 여야 ---. <후단 삭제>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 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 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 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 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 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 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 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 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 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이 기능이 부가되지 않은 등록증 (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 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존의 등록증을 반납(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등록증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5.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선택을 바꾸어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

<신 설>

<신 설>

<신 설>

려는 경우

7.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④ 영 제20조의2제2항 단서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
발급의 경우”란 제3항제4호부
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여 신분
증형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
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조
의2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신분증형 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재발급 사유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
우 : 3천원
2. 제3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
당하는 경우 : 1천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해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제3
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신
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

<신 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임시로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⑧ ----- 기재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

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분증형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통해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교부할 때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임을 확인받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제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임시 등록증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한 경우에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장애인이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신분증형 등록증을 이용하여 제1항의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법정대리인의 동의)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의 사용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모바일 등록증 회수등)

①법 제32조의3제4항의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
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5.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이동통신단
말장치에서 모바일 등록증 재
발급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이 회수된 이후에 모바일 등록
증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
고 모바일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야 한다.

③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
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등록증의 분실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동
통신단말장치의 분실 신고를 하
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의
기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 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 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 식의 신청서에 <u>등록증</u>과 등록대 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u>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등록 증의 분실 신고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분실 신고를 취소하 는 경우에는 종전의 모바일 등 록증의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정 지된 모바일 등록증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 수된 이후에는 분실 신고를 취 소하더라도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u>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 ----- ----- ----- <u>등록증 또는 모바</u> <u>일 등록증</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